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313 호            |
| 의결<br>연월일 | 2015. . .<br>(제 회) |

**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

|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
| 발의자   | 임병운 의원 등 7명     |
| 발의연월일 | 2015년 11 월 23 일 |

#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임병운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313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15년 11월 23일

발의자 : 임병운, 박봉순, 박종규,  
박한범, 장선배, 최병운,  
김양희

## 1. 개정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방안 권고 등에 따라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
- 자연학습원의 원활한 운영과 수지 개선을 위해 위탁교육과 단순 시설이용자를 구분하고 연수비 및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자연학습원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(안 제3조)

- 청천면 송면리 → 화양로 1314-12번지

나. 시설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(안 제10조의2)

-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준용하여 처리토록 함.

다. 관리·운영 수탁자를 청소년단체 등으로 한정(안 제12조)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으로 한정

라. 두 번 이상 위탁 시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을 평가 후 연장(안 제12조)

- 위탁기간 연장을 한 차례에 한정하고, 두 번 이상 연장이 필요한 경우,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」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토록 규정

마. 시설사용료 조정(별표)

- 연수비, 숙식비, 시설사용료 등을 현실적으로 인상 조정

3. 개정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다.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5-32호

라. 협의 :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협의

마. 비용추계 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#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**「청소년기본법」**”을 “**「청소년 기본법」**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**송면리**”를 “**화양로 1314-12번지**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**”를 “**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**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각호의**”를 “**각 호의**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**관리자**”를 “**도지사**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전단 중 “**제반시설**”을 “**해당 시설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별지 제1호 서식**”을 “**별지 제1호서식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별지 제2서식에 따라**”를 “**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**”으로, “**알려야**”를 “**보내야**”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사용료의 반환)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그 기간만큼 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2.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

제12조제1항 중 “자연학습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, 비영리법인, 청소년단체 등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 한다)에 학습원 관리·운영을”을 “청소년단체 등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 한다)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그 위탁기간”을 “위탁기간”으로, “필요한 경우 3년단위로 그 기간을”을 “한 차례에 한정하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이외의”를 “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얻어야”를 “받아야”로 하며,

제14조 중 “파손·망실하였을 경우는”을 “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”으로 하고,

제15조제1항 중 “익년도”를 “다음 해”로, “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”를 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”로 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1회”를 “한 차례”로 한다.

[별표] 연수비,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연수비,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 (제10조 관련)

□ 연수비(위탁교육)

(단위 : 1인당, 원)

| 구 분     | 숙박비(1박) | 식비(1식) | 교육비(1인)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|
| 초등학생    | 8,500   | 5,500  | 16,000  |    |
| 중학생     | 9,000   | 5,800  | 16,200  |    |
| 고등학생    | 9,500   | 6,100  | 16,400  |    |
| 대학생/일반인 | 10,000  | 7,000  | 19,000  |    |

※ 식비의 경우 식단변경 요구 시 사용자와 별도 협의. (단순 시설사용자의 식비도 위에 준함)

※ 19세 이하 청소년은 고등학생이하 연수비 적용.

□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

(단위 : 원)

| 구 분       | 사용기준   | 사 용 료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숙 소       | 1실/1박  | 44,000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대 강 당     | 1실/4시간 | 300,000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회 의 실 (대) | 1실/4시간 | 150,000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회 의 실 (중) | 1실/4시간 | 100,000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회 의 실 (소) | 1실/4시간 | 100,000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다목적운동장    | 1면/4시간 | 200,000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캠프파이어     | 1면/1회  | 300,000               | 위탁만 운영가능 |
| 잔디운동장     | 1면/4시간 | 200,000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물놀이장      | 1면/1일  | 200,000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서바이벌게임    | 1명/1게임 | 학생(5,000), 일반(15,000) |          |
| 체험시설      | 1명/1회  | 10,000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야영장       | 1명/1회  | -                     | 미운영      |

※ 위탁교육의 경우, 서바이벌게임과 체험시설을 제외한 시설사용에 대해 추가요금 없음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에 관한 적용례) 별표에 따른 사용료는 이 조례 공포 후 시설

사용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 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행  | 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  |
|--|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“청소년단체“란 「<u>청소년기본법</u>」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과 단체를 말한다.</p> <p>4. (생 략)</p>                  | <p>제2조(정의) -----<br/>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「<u>청소년 기본법</u>」 -----<br/>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제3조(위치) 충청북도자연학습원(이하 “학습원“이라 한다)은 괴산군 청천면 <u>송면리</u>에 둔다.</p>   | <p>제3조(위치) -----<br/>-----<br/><u>화양로 1314-12번지</u> --.</p>  |
| <p>제4조(시설사용) 학습원은 자연학습과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는 자연권 수련시설로서 다음 <u>각호의 어느 하나</u> 해당하는 경우에 <u>한정하여</u>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4조(시설사용)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<br/>----- <u>에 해당하는 경우</u> -----<br/>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제6조(연수신청) ① 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와 기관·단체는 다음 <u>각호의 어느 하나</u>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그 밖에 <u>관리자</u>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 | <p>제6조(연수신청) ① -----<br/>-----<br/><u>각 호의</u> -----<br/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도지사</u> -----<br/>---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|

| 현행   | 개정안  |
|--|--|
| <p>제9조(시설사용신청) ① 학습원에서 자연학습, 심신단련,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신청을 한 자에게는 <u>제한시설</u>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습원의 운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학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<u>별지 제1호 서식</u>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시설사용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설사용 대상으로 결정 하였을 때에는 <u>별지 제2호 서식</u>에 따라 시설사용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<u>알려야</u> 한다.</p> | <p>제9조(시설사용신청) ①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 <u>해당 시설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② -----<br/>----- <u>별지 제1호서식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③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별지 제2호서식</u> -----<br/>----- <u>에 따른</u> -----<br/>----- <u>보내야</u> -----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 | <p>제10조의2(사용료의 반환)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그 기간만큼 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</li> <li>2.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</li> </ol> |

| 현행   | 개정안  |
|--|--|
| <p>제12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도지사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·운영의 일부나 전부를 <u>자연학습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, 비영리법인, 청소년단체 등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한다)에 학습원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할 경우 <u>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3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| <p>제12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 <u>청소년단체 등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한다)에 -----</u>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② -----<br/>----- <u>위탁기간</u> -----<br/>--- <u>한 차례에 한정하여</u> -----<br/>-----.</p> <p>③ <u>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|

| 현행   | 개정안  |
|--|--|
| <p>제13조(재산의 관리) 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관리하는 재산은 학습원 운영 <u>이외의</u>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② 수탁관리자가 학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,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<u>얻어야</u>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| <p>제13조(재산의 관리) ①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외의</u> -----<br/>-----.</p> <p>②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받아야</u> -----<br/>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4조(시설변상책임) 연수생, 시설이용자, 수탁관리자가 고의나 과실로 학습시설이나 비품을 <u>파손·망실하였을</u> 경우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.</p>  | <p>제14조(시설변상책임)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파손 또는 잃어버렸을</u> 경우에는 -----<br/>-----.</p>   |
| <p>제15조(예산과 결산) ① 수탁관리자는 학습원의 <u>익년도</u>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0일전까지 <u>도지사에게</u>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.</p> <p>② (생략)</p>  | <p>제15조(예산과 결산) ① -----<br/>----- <u>다음 해</u> -----<br/>-----<br/>--- <u>도지사의 승인을</u> <u>받아야</u> ----<br/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                  |

| 현행  | 개정안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|  |
|---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|
| <p>제16조(위탁계약의 취소) 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<u>각호의</u>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 | <p>제16조(위탁계약의 취소) -----<br/>----- <u>각 호의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|  |
| <p>제17조(지도·감독) ① (생략)</p> <p>② 도지사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<u>1회</u>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  | <p>제17조(지도·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br/>-----<br/>- <u>한 차례</u> -----<br/>-----<br/>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|  |
| <p>[별표]</p> <p><u>연수비,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</u><br/>(제10조 관련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수비(숙박비, 식비, 시설사용교육비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 : 1인당,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숙박비<br/>(1박)</th> <th>식비<br/>(1식)</th> <th>시설사용·교육비<br/>(1일)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초등학생</td> <td>7,000</td> <td>4,500</td> <td>11,0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중학생</td> <td>7,500</td> <td>4,800</td> <td>11,2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고등학생</td> <td>8,000</td> <td>5,100</td> <td>11,4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대학생/<br/>일반인</td> <td>9,000</td> <td>5,500</td> <td>11,600</td> <td>부가세 별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이 외 체험시설 및 서바이벌게임 이용 시 추가로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를 적용하고, 식비의 경우 식단변경 요구 시 사용자와 별도 협의.<br/>※ 19세 이하 청소년은 고등학생이하 연수비 적용.</p> | 구분  | 숙박비<br>(1박) | 식비<br>(1식)       | 시설사용·교육비<br>(1일) | 비고 | 초등학생 | 7,000 | 4,500 | 11,000 |  | 중학생 | 7,500 | 4,800 | 11,200 |  | 고등학생 | 8,000 | 5,100 | 11,400 |  | 대학생/<br>일반인 | 9,000 | 5,500 | 11,600 | 부가세 별도 | <p>[별표]</p> <p><u>연수비,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</u><br/>(제10조 관련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수비(위탁 교육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 : 1인당,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숙박비<br/>(1박)</th> <th>식비<br/>(1식)</th> <th>교육비<br/>(1인)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초등학생</td> <td>8,500</td> <td>5,500</td> <td>16,0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중학생</td> <td>9,000</td> <td>5,800</td> <td>16,2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고등학생</td> <td>9,500</td> <td>6,100</td> <td>16,4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대학생/<br/>일반인</td> <td>10,000</td> <td>7,000</td> <td>19,000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식비의 경우 식단변경 요구 시 사용자와 별도 협의. (단순 시설사용자의 식비도 위에 준함)<br/>※ 19세 이하 청소년은 고등학생이하 연수비 적용.</p> | 구분 | 숙박비<br>(1박) | 식비<br>(1식) | 교육비<br>(1인) | 비고 | 초등학생 | 8,500 | 5,500 | 16,000 |  | 중학생 | 9,000 | 5,800 | 16,200 |  | 고등학생 | 9,500 | 6,100 | 16,400 |  | 대학생/<br>일반인 | 10,000 | 7,000 | 19,000 |  |
| 구분  | 숙박비<br>(1박)   | 식비<br>(1식)  | 시설사용·교육비<br>(1일) | 비고  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|  |
| 초등학생  | 7,000   | 4,500       | 11,000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|  |
| 중학생   | 7,500   | 4,800       | 11,200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|  |
| 고등학생  | 8,000   | 5,100       | 11,400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|  |
| 대학생/<br>일반인   | 9,000   | 5,500       | 11,600           | 부가세 별도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|  |
| 구분  | 숙박비<br>(1박)   | 식비<br>(1식)  | 교육비<br>(1인)      | 비고  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|  |
| 초등학생  | 8,500   | 5,500       | 16,000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|  |
| 중학생   | 9,000   | 5,800       | 16,200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|  |
| 고등학생  | 9,500   | 6,100       | 16,400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|  |
| 대학생/<br>일반인   | 10,000  | 7,000       | 19,000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|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|  |

□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

(단위 : 원)

| 구분      | 사용 기준 | 사 용 료   |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|       | 고등학생 이하 | 대학생 /일반인 |                 |
| 대강당     | 1실/시간 | 10,000  | 20,000   | 대학생/일반인은 부가세 별도 |
| 회의실     | 1실/시간 | 7,000   | 15,000   |                 |
| 운동장     | 1면/시간 | 10,000  | 20,000   |                 |
| 캠핑파이어장  | 1면/시간 | 10,000  | 20,000   |                 |
| 야영장     | 1면/1박 | 5,000   | 10,000   |                 |
| 체험시설    | 1명/1회 | 4,000   | 8,000    |                 |
| 서바이벌 게임 | 1명/1회 | 4,000   | 8,000    |                 |

- ※ 이 외 숙박비 및 식비는 연수비를 적용하고, 식비의 경우 식단변경 요구시 사용자와 별도 협의.
- ※ 19세이하 청소년은 고등학생이하 사용료 적용.

□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

(단위 : 원)

| 구분      | 사용기준   | 사 용 료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숙 소     | 1실/1박  | 44,000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대강당     | 1실/4시간 | 300,000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회의실 (대) | 1실/4시간 | 150,000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회의실 (중) | 1실/4시간 | 100,000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회의실 (소) | 1실/4시간 | 100,000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다목적 운동장 | 1면/4시간 | 200,000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캠핑파이어   | 1면/1회  | 300,000               | 위탁만 운영가능 |
| 잔디운동장   | 1면/4시간 | 200,000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물놀이장    | 1면/1일  | 200,000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서바이벌 게임 | 1명/1게임 | 학생(5,000), 일반(15,000) |          |
| 체험시설    | 1명/1회  | 10,000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야영장     | 1명/1회  | -                     | 미운영      |

- ※ 위탁교육의 경우, 서바이벌게임과 체험시설을 제외한 시설사용에 대해 추가요금 없음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“라 한다)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3.6.21.>
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. <신설 2013.6.21.>

1.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3.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
4.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6.21.>

## □ 청소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8. “청소년단체“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 □ 청소년활동진흥법

제10조(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)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### 1. 청소년수련시설

가. 청소년수련관: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

나. 청소년수련원: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

다. 청소년문화의 집: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·문화·예술 중심의 수련시설

라. 청소년특화시설: 청소년의 직업체험, 문화예술, 과학정보,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

마. 청소년야영장: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,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

바. 유스호스텔: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·설비와 부대·

편익시설을 갖추고, 숙식편의 제공,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(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·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)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

2. 청소년이용시설: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

제11조(수련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국가는 둘 이상의 시·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2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3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읍·면·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4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·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·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③ 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,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(이하 “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”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

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(이하 “위탁운영단체“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.

제19조의2(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,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우수한 수련시설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를 교육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주기·방법·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## □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-4호)

56. 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(3개 업종)

**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, 할인회원권업 (1-2)**

| 분      쟁      유      형  | 해      결      기      준   | 비      고  |
|---|--|---|
| 1)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<br><br>2) 시설고장,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<br><br>3) 신체상 피해발생<br><br>4)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<br>- 개시일 이전<br><br>- 개시일 이후 | ○ 계약해제<br><br>○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<br><br>○ 배상액 배상<br><br>○ 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% 배상<br><br>○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% 배상 | *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「회원제 체육시설업」 제외<br>· 회원제 골프장업, 스키장업, 요트장업,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<br><br>* 개시일이란,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,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. |

**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, 할인회원권업 (2-2)**

| 분    쟁    유    형   | 해   결   기   준  | 비    고 |
|--|--|--------|
| 5)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<br>- 개시일 이전<br><br>- 개시일 이후  | ○ 총이용금액의 10% 공<br>제 후 환급<br><br>○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<br>에 해당 하는 금액과<br>총이용금액의 10% 공<br>제 후 환급 |        |
| ○ 사은품 반환<br>-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<br>· 사은품 미사용 시 : 해당 사은품 반환<br>· 사은품 사용 시 :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<br>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울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(단,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<br>보지 아니함.)<br>·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: 현존상태로 반환<br>-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·해지 시: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.<br><br>○ 체육시설업<br>- 수영장, 체력단련장, 테니스장, 대중종합체육시설업, 골프연습장 등<br>○ 레저용역업<br>- 이벤트 주관, 주말농장, 영화예매 등<br>○ 할인회원권업<br>-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,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 |  |        |